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법의 적용 대상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등〉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84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 검토의견 .....                         | 3  |
| 1. 총괄적 검토 .....                        | 3  |
| 2. 법률 제명 및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 7  |
| 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안 제5조) .....          | 17 |
|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 2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음. 또한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경우도 많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교제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특히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지난 3월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사법 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이에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한 해 동안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38명, 살인미수 행위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311명에 달함.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을 받는다고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의존하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고 현장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음.

이에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해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는 가해자의 통제·지배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함.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비난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수사·사법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Ⅲ. 검토의견

#### 1. 총괄적 검토

-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함)」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함)」이 있음. 가정폭력처벌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타법 개정을 포함하여 25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진 바 없음.
- 구성체계 측면에서 현행법과 전부개정법률안을 비교하여 보면, 현행은 제명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본칙 기준 5장 4절 8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여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였고, 반의사불벌 배제 조문을 신설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문을 삭제하였음. 전부개정안의 본칙은 현행법과 동일한 5장 4절 80개 조문 수를 유지하였으나, 가지번호의 조문을 정비하였음.

<조문별 체계 비교표>

| 현행<br>제명             | 개정(안)<br>제명                       | 개정사항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친밀한 관계 폭력’ 추가 |
| 제1장 총칙<br>제1조 목적     | 제1장 총칙<br>제1조 목적                  | ‘친밀한 관계 폭력’ 추가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항           |
|----------------------------------------------------------------------------------------------------------------------------------------------------------------------------------------------------------------------------------------------------------------------------------------------------------------------------------------------------------------------------------------------------------------------------------------------------------------------------------------------------------------------------------------------------------------------------------------------------------------------------------------------------------------------------------------------------------------------------------------------------------------------------------------------------------------------------|----------------------------------------------------------------------------------------------------------------------------------------------------------------------------------------------------------------------------------------------------------------------------------------------------------------------------------------------------------------------------------------------------------------------------------------------------------------------------------------------------------------------------------------------------------------------------------------------------------------------------------------------------------------------------------------------------------------------------------------------------------------------------------------------------------------------------------------------------------|----------------|
| 제2조 정의<br>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br>제3조2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 제2조 정의<br>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br>제4조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br>제5조 반의사불벌 배제                                                                                                                                                                                                                                                                                                                                                                                                                                                                                                                                                                                                                                                                                                                                                                                           | 신설             |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친밀한 관계 폭력' 추가 |
| <b>제1절 통칙</b><br>제4조 신고의무 등<br>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br>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br>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br>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br>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br>제8조의3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br>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br>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br>제10조 관할<br>제11조 검사의 송치<br>제12조 법원의 송치<br>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br>제14조 송치서<br>제15조 이송<br>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br>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br>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br>제18조의2 「형사소송법」의 준용<br><b>제2절 조사·심리</b><br>제19조 조사·심리의 방향<br>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br>제21조 조사명령 등<br>제22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br>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br>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br>제25조 긴급동행영장<br>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br>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br>제28조 보조인<br>제29조 임시조치<br>제29조의2 임시조치의 집행 등<br>제30조 심리기일의 지정<br>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br>제32조 심리의 비공개<br>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 등<br>제34조 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br>제35조 검증, 압수 및 수색<br>제36조 협조와 원조<br>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br>제38조 처분의 기간 등<br>제39조 위임규정<br><b>제3절 보호처분</b><br>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 <b>제1절 통칙</b><br>제6조 신고의무 등<br>제7조 가정폭력범죄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br>제8조 고소에 관한 특례<br>제9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br>제10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br>제11조 긴급임시조치<br>제12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br>제13조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의 처리<br>삭제<br>제14조 관할<br>제15조 검사의 송치<br>제16조 법원의 송치<br>제17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 처리<br>제18조 송치서<br>제19조 이송<br>제20조 보호처분의 효력<br>제21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br>제22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br>제23조 「형사소송법」의 준용<br><b>제2절 조사·심리</b><br>제24조 조사·심리의 방향<br>제25조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조사관<br>제26조 조사명령 등<br>제27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br>제28조 진술거부권의 고지<br>제29조 소환 및 동행영장<br>제30조 긴급동행영장<br>제31조 동행영장의 방식<br>제32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br>제33조 보조인<br>제34조 임시조치<br>제35조 임시조치의 집행 등<br>제36조 심리기일의 지정<br>제37조 심리기일의 변경<br>제38조 심리의 비공개<br>제39조 피해자의 진술권 등<br>제40조 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br>제41조 검증, 압수 및 수색<br>제42조 협조와 원조<br>제43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br>제44조 처분의 기간 등<br>제45조 위임규정<br><b>제3절 보호처분</b><br>제4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 삭제             |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항           |
|--------------------------------------------------------------------------------------------------------------------------------------------------------------------------------------------------------------------------------------------------------|--------------------------------------------------------------------------------------------------------------------------------------------------------------------------------------------------------------------------------------------------------|----------------|
|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br>제42조 몰수<br>제43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br>제44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br>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br>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br>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br>제48조 비용의 부담<br><b>제4절 항고와 재항고</b><br>제49조 항고<br>제50조 항고장의 제출<br>제51조 항고의 재판<br>제52조 재항고<br>제53조 집행의 부정지<br>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 제47조 보호처분의 기간<br>제48조 몰수<br>제49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br>제50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br>제51조 보호처분의 변경<br>제52조 보호처분의 취소<br>제53조 보호처분의 종료<br>제54조 비용의 부담<br><b>제4절 항고와 재항고</b><br>제55조 항고<br>제56조 항고장의 제출<br>제57조 항고의 재판<br>제58조 재항고<br>제59조 집행의 부정지<br>제60조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                |
| <b>제3장 피해자보호명령</b>                                                                                                                                                                                                                                     | <b>제3장 피해자보호명령</b>                                                                                                                                                                                                                                     | ‘친밀한 관계 폭력’ 추가 |
|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br>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br>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br>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br>제55조의5 이행실태의 조사<br>제55조의6 병합심리<br>제55조의7 준용<br>제55조의8 항고와 재항고<br>제55조의9 위임규정                                                                                          | 제61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br>제62조 피해자보호명령 등<br>제63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br>제64조 임시보호명령<br>제65조 이행실태의 조사<br>제66조 병합심리<br>제67조 준용<br>제68조 항고와 재항고<br>제69조 위임규정                                                                                                          |                |
| <b>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b>                                                                                                                                                                                                                                 | <b>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b>                                                                                                                                                                                                                                 | ‘친밀한 관계 폭력’ 추가 |
| 제56조 배상신청<br>제57조 배상명령<br>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br>제59조 신청의 각하<br>제60조 불복<br>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br>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70조 배상신청<br>제71조 배상명령<br>제72조 배상명령의 선고<br>제73조 신청의 각하<br>제74조 불복<br>제75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br>제76조 다른 법률의 준용                                                                                                                                             |                |
| <b>제5장 벌칙</b>                                                                                                                                                                                                                                          | <b>제5장 벌칙</b>                                                                                                                                                                                                                                          | ‘친밀한 관계 폭력’ 추가 |
|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br>제64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br>제65조 과태료<br>제66조 과태료                                                                                                                                                                                       | 제77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br>제78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br>제79조 과태료<br>제80조 과태료                                                                                                                                                                                       |                |

□ 주요 내용은 ① 제명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추가 ② “가정 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 폭력” 추가, ③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구성원”에 “친밀한 관계인 사람” 추가, ⑥ “가정보호사건”을 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으로 변경하여

현행 가정폭력범죄에 적용하고 있는 이 법을 ‘친밀한 관계 폭  
범죄’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편, ④ 「형법」 등의 반의사불벌죄  
배제, 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근거의  
삭제 등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
| 제명                 | ○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br>: 이 법의 보호 대상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서<br>‘피해가족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인’으로 함.                                                                                                                                                          |
| 제1장 총칙             | ○ 이 법의 목적(제1조)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br>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br>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삭제<br>○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정의 신설<br>○ ‘가정폭력범죄’를 ‘가정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범죄명<br>변경<br>○ ‘가정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현행법상 범죄가 아닌 통제<br>행위를 추가<br>○ 「형법」 등의 반의사불벌죄 배제 신설 |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br>○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근거 삭제<br>○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
| 제3장<br>피해자보호명령     | ○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                                                                                                                                                                                                                            |
| 제4장 민사처리에<br>관한 특례 | ○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                                                                                                                                                                                                                            |
| 제5장 벌칙             | ○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                                                                                                                                                                                                                            |
| 부칙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br>○ 다른 법령과의 관계                                                                                                                                                                                                                          |

## 2. 법률 제명 및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하여 규정함.

| 현행                                                                                                                                                                          | 전부개정안                                                                                                        |
|-----------------------------------------------------------------------------------------------------------------------------------------------------------------------------|--------------------------------------------------------------------------------------------------------------|
|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 <u>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
| 제1조(목적) 이 법은 <u>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제1조(목적) ----- <u>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서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정하고, 피해 가족구성원과 친밀한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가정폭력”이란 <u>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u>                                                                                                                                    | 1.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u>가정구성원 및 친</u>                                                                     |

| 현행                                                                                                                                                                                                                                                        | 전부개정안                                                                                                                                                                                                                                                                                                                                                                                                                                              |
|-----------------------------------------------------------------------------------------------------------------------------------------------------------------------------------------------------------------------------------------------------------|----------------------------------------------------------------------------------------------------------------------------------------------------------------------------------------------------------------------------------------------------------------------------------------------------------------------------------------------------------------------------------------------------------------------------------------------------|
| <p><u>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2. “<u>가정구성원</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u>&lt;신설&gt;</u></p> <p>3. “<u>가정폭력범죄</u>”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p> | <p><u>밀한 관계인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2. “<u>가정구성원 및 친밀한 관계인 사람</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마. <u>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애정에 기반하여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특별히 친밀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의 관계의 실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하였던 사람</u></p> <p>3. “<u>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u>”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p> |

| 현행                                                                                               | 전부개정안                                                                                                                                                                                                                                                                                                           |
|--------------------------------------------------------------------------------------------------|-----------------------------------------------------------------------------------------------------------------------------------------------------------------------------------------------------------------------------------------------------------------------------------------------------------------|
| 제2항, 제272조(영아유기),<br>제273조(학대, 존속학대)<br>및 제274조(아동학사)의<br>죄<br>다. ~ 파. (생략)<br><u>&lt;신설&gt;</u> | 조(유기, 존속유기)제1항·<br>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br>학대) 및 제274조(아동학<br>사)의 죄<br>다. ~ 파. (현행과 같음)<br><u>하.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br/>상 이루어진 상대방을 감<br/>시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일<br/>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위<br/>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br/>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br/>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br/>고 객관적·일반적으로 볼<br/>때 상대방이 일상생활의<br/>평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br/>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br/>정되는 행위</u> |
| 4. <u>“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br/>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br/>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u>                                   | 4. <u>“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br/>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 및<br/>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범<br/>한 사람과 공범을 말한다.</u>                                                                                                                                                                                                                             |
| 5. “피해자”란 <u>가정폭력범죄로</u><br>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br>입은 사람을 말한다.                                         | 5. “피해자”란 <u>가정폭력 및 친<br/>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u> 인하<br>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br>사람을 말한다.                                                                                                                                                                                                                                     |

| 현행                                                                                                 | 전부개정안                                                                                                            |
|----------------------------------------------------------------------------------------------------|------------------------------------------------------------------------------------------------------------------|
| 6. “ <u>가정보호사건</u> ”이란 <u>가정폭력범죄</u> 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6. “ <u>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u> ”이란 <u>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u> 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u>가정보호사건</u> 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u>가정폭력행위자</u> 에게 하는 <u>제40조</u> 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u>가정 및 친밀한 관계 보호사건</u> 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u>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u> 에게 하는 <u>제46조</u> 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 <u>7의2.</u> “ <u>피해자보호명령사건</u> ”이란 <u>가정폭력범죄</u> 로 인하여 <u>제55조의2</u> 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u>8.</u> “ <u>피해자보호명령사건</u> ”이란 <u>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u> 로 인하여 <u>제62조</u> 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변경의 적절성 여부

□ 먼저,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법률의 제명을 개정함에 있어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를 가정

폭력범죄 피해자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친밀한 관계의 정의, 체계 정합성 및 다른 범죄의 처벌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으로, 현행법 제1조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서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정하고, 피해 가족구성원과 친밀한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가정폭력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가정보호가 우선됨으로써 피해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sup>1)</sup>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가정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이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sup>2)</sup>.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현행법은 1997년 제정 당시부터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형사

---

1) 박복순,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과제」, 『여성연구』, 2018. Vol. 99 No. 4 p. 209

2) 이승현,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2호 (2019.8.). p. 102

처벌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회복에  
방점을 둔 제도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sup>3)</sup>

- 둘째, 법의 이념적 측면에서도 가정의 보호와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양립불가능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삭제하여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각종  
제도들의 시행 방향은 물론 향후의 개정방향까지 전면적으로 수정  
하는 결과가 되므로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논의 과정과 현행 제도들의  
목적과 시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나. 추가하는 정의 규정 관련

□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제2호 “가정구성원”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인

---

3) [15085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그동안 家庭暴力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家庭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家庭暴力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 家庭暴力을 더 이상 해당 家庭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한편 家庭暴力의 처방에 대하여는 刑事處罰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家庭의 解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暴力의 制止나 暴力性을 矯正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건강한 家庭을 육성하고 家庭의 평화와 가정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家庭暴力行爲者에 대한 保護處分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家庭暴力으로 입은 損害에 대한 民事處理特例를 규정하려는 것임.

사람을 추가하여 “가정구성원 및 친밀한 관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애정에 기반하여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특별히 친밀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의 관계의 실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하였던 사람”을 친밀한 관계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을 가정구성원과 동일한 위상에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정의만으로는 단순 친구 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상대방과 결혼한 사람끼리의 교제 등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교제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 주거를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구성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 상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친밀한 관계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개념화할 요소가 분명치 않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음.<sup>4)</sup>

---

4) 형사정책연구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의 법적 정당성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봄호)

한편, 현행법 제2조<sup>5)</sup>는 가정폭력의 대상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판례는 “사실혼” 여부를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음<sup>6)</sup>.

따라서 “교제 관계”의 정의도 주관적으로 혼인의 가능성이나 일정 기간 지속적·배타적 만남의 의사를 전제하여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동거 등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지,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조제3호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개정하고, 제2조 각 목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루어진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있음.

---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판결

다만, 당사자 일방의 강압적 통제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에서 포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으로, 현행법 제2조제4호는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로 개정하면서, 현행 공범의 범위를 “가정구성원인 공범”에서 “공범”으로 규정하여 공범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현행                                                   | 전부개정안                                                                  |
|------------------------------------------------------|------------------------------------------------------------------------|
| 4. <u>“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u> | 4. <u>“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과 공범을 말한다.</u> |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친밀한 관계”는 “동거중”이거나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친밀한 관계를 혼인, 가정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제폭력범죄”

개념만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2조제3호 하목의 감시·고립·통제행위는 그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어느 경우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지가 모호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에 오히려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유형을 추가할 경우 스토킹처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체계적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안 제5조)

-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 및 협박, 명예훼손의 죄에 대하여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

| 현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p><u>제5조(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u></p> <p><u>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및 제312조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p> <p><u>1.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u></p> <p><u>2.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u></p> <p><u>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u></p> |

| 현행 | 개정안                                           |
|----|-----------------------------------------------|
|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 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의 필요성

□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 「형법」상 폭행, 협박 및 명예훼손의 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공소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sup>7)</sup>

### 7)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제2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sup>8)</sup>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해달라는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거나 보복을 우려하여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미국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거부와 고소 취하로 가정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폭력범죄자를 기소하는 강제기소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는 의견이 있음.<sup>9)</sup>

□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이면서 재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따라 진정으로 처벌불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폭력해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지 않고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 가정의 평화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가정의 회복과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돕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이 반복되며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의

---

9) 허민숙,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보호제도의 한계와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9.

신설 취지는 공감하나, 일시적 다툼이나 갈등 등 경미 사안의 형사 입건화, 피해자 의사 존중 필요성 등 사유로 반의사불벌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경우 현장조치·수사 등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어 경찰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 불벌배제 조문을 신설하면서 현행법 제9조제2항을 삭제하였음.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해당 조문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처벌 불원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임.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친고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 사건 처리 근거도 같이 삭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 개정안은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였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br>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삭 제> |

#### 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필요성 검토

-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또는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로,<sup>10)11)</sup>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외에도 가정폭력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1)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3조(대상사건)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벽이나 약물·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처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검찰 단계에서 신속한 성행 교정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sup>12)</sup>.

○ 그러나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sup>13)</sup>

□ 이는 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가정폭력행위자로 하여금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②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③ 불성실한 상담 태도를 보이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사후관리문제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의 적정성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바  
①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을 통한 해결은 또 다른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고<sup>14)</sup>, ② 가정폭력은 단순 폭력과는 달리 가정을

12)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과제』 중 발제문, 2018. 12. 19, p.15.

13) 제21대국회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3건(정춘숙·양경숙·서영석의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고, 현재 김영주의원안(의안번호 제17809호)이 임기만료폐기되었음.

14) 예컨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경우 여성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역할은 미약한데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개연성은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유지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를 상담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sup>15)</sup>, ③ 가정법원에서도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상담위탁(제8호)을 선호하고 있는 점<sup>16)</sup>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 따라서 개정안처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더불어 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대상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② 상담시간과 기간을 늘려 상담의 효과를

15)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과제』 중 발제문, 2018. 12. 19, p.15.

16)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호처분의 유형별 처리현황에 관한 통계를 보면, 상담위탁(제8호)이 1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봉사·수강명령(제4호) 11.7%, 보호관찰(제5호)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과제』 중 발제문, 2018. 12. 19, p.11.).

높이는 방안, ③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 상담조치를  
어길 경우 형사절차로 회부하는 방안 마련<sup>17)</sup> 등 현행 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59 |

---

17) 조주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3. 12. 31, pp.28-29.